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9 선고 2022가단1041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488,687원과 그중 18,488,538원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2. 5. 7.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8,488,6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8,488,6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A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B이 위 구상금 채권액을 지급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정왕현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울산광역시 동구 대 369.4㎡
2.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독주택
1층 20.47㎡
2층 213.70㎡
3층 213.70㎡
4층 213.70㎡
5층 213.70㎡
6층 227.70㎡
7층 73.3㎡
지하 170.08㎡

